#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기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241

발의연월일: 2021. 5. 20.

발 의 자:유기홍·권인숙·김철민

박홍근 • 서동용 • 양정숙

이원욱 • 인재근 • 조응천

홍기원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조문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근거로 작용하려면 '주체의 모호성' 문제 등 공동 주체규정으로 권한 배분의 충돌과 책임의 불명확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.

'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과 교직원 등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'고 하여,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마련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참여자들에게 돌리고 있음.

이에 공동 주체의 모호성을 해소하고,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 치단체의 교육 시책 수립 실시 권한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학교운영 자율성과 참여 보장을 명확히 하고자 함(안 제5조). 법률 제 호

##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중 "교육의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,"를 "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중 "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"를 "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"로, "있다"를 "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,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교육의 자주성 등) <u>&lt;신</u>	제5조(교육의 자주성 등) <u>① 국</u>
<u>설&gt;</u>	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
	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
	하며,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
	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해
	<u>야 한다.</u>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	② 관할
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	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
<u>하여야 하며,</u> 지역 실정에 맞	<u></u>
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	
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	
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	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
<u>되며</u> , 교직원·학생·학부모	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
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	하며
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	
여할 수 <u>있다</u> .	<u>있도록 보장하</u>
	<u> 여야 한다</u> .